

제247회 거창군의회의 임시회

조 례 안 상 정
(15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0-21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20-11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12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22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0-23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20-24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2020-25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43
2020-13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47
2020-26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1
2020-27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2020-28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61
2020-29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2020-14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2020-30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2020-31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2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안전검토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조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변경함

1)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2) 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과 실제 경비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취지에 맞게 변경

나. 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3조)

1) 변경 : 일비 ⇒ 참석수당

2) 신설 : 심사수당

3) 지급제외 : 거창군 소속 공무원, 거창군의회 의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2. 5.~2.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대면회의에 한정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전검토 등 심사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서면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거창군의회 의원인 위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심사를 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1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관내 기업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 응급장비 설치구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사랑 환경을 조성하고 군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
- 나. 근로자를 위한 응급장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18조)
- 다. 서식을 규칙으로 이동 규정함(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5,000천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 14.~2. 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군수는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자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에게 이자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응급장비 지원) ① 군수는 근로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서 응급장비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4조(이자 지원) ① (생 략)</u> <u>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자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11조(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 군수</u> <u>는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관내 기업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 범위</u> <u>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4조(이자 지원) ① (현행과 같음)</u> <u>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군수에게 이자 보조금 신청</u> <u>을 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u> <u>수는 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u> <u>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 (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u> <u>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u> <u>같다.</u> <u>1. 기본부스는 조립 부스 2개 기준</u> <u>2. 부스임차비 100분의 80 지원, 지원</u> <u>금액은 2백만원 이내</u> <u>3.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u> <u>지원한도액은 3백만원 이내</u> <u>③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u> <u>같다.</u></p>	<p><u>제18조(응급장비 지원) ① 군수는 근로</u> <u>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u> <u>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에서 응급</u> <u>장비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u> <u>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u> <u>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u> <u>수는 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u> <u>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 (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u> <u>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u> <u>규칙으로 정한다.</u></p>

1.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신청 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2.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
3.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전기설비 안전점검 지원(안 제11조)
- 나. 근로자를 위한 응급장비 지원(안 제1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가. 예산 : 15,000천원
 - 1) 전기설비 안전점검비 : 5,000천원
 - 2) 응급장비 구입비
: 응급장비 200개×기업 10곳×50퍼센트 = 10,000천원

4. 작성자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1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공공 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상위 법령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결정기준 등이 명시되어있음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용료 산정기준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필요에 따라 신속한 입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절차나 서식 등을 규칙으로 위임

- 1) 폐수 등 유입처리 승인·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안 제3조제2항)
- 2) 배수설비 개시 신고(안 제6조)
- 3) 사용료 부과절차(안 제10조)

나. 사용료 산정기준,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규칙으로 위임(안 제10조·제11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48조의3·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36,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 21.~2.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중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 금액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른다.”를 “지원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u></p> <p>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장건물 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p> <p>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p>	<p><u>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u></p> <p>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승인·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p>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부 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군수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

제6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

의 사용료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농도 분석비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한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을 위해 자격을 갖춘 환경업체에 검사의뢰 후 수수료 매달 지급 = 연 36,000천원

작성자 :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2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시각장애인 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 확대(안 제2조)

- 1) 현행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2) 확대 : 현행 +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영주 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인 장애인과 그 가족

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6조)

- 1) 인용조문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2)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감면기간 추가 연장

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9조의2·별표)

- 1) 대상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2) 임대기간
 - (가) 3개월 이상
 - (나) 3개월 초과 시 5퍼센트 인하율 가산
3개월 미만 시 월할 계산
- 3) 감면율 : 10퍼센트~50퍼센트(5퍼센트 단위 구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제78조의3, 「지방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3. 18.~4. 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제1항”을 “제1항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6항”으로 한다.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일 것. 다만, 공동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나.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균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일 것. 다만, 공동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일 것

② (생략)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나.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 [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신 설>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1. 과세기준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별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제9조의2 관련)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

비고

1.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월 수} \div 3$$

2.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2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4조의2)

- 1)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설(안 제4조의3)

- 1) 세액 1천만원 이하인 이의신청등 접수 시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2) 대리인 선정 신청(군수) → 선정대리인 지정 요청(도지사) → 지정 통보(군수) → 신청결과 통지

다. 선정대리인 의무·우대 규정 신설(안 제4조의4)

- 1) 선정대리인 활동 우수자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우대
- 2)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 2. 14.~3. 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 신청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 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p>제4조의3(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p> <p>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p>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신청등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2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군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려는 경우 수익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적법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위임 사항 반영(안 제15조의2제1항)

1) 조례로 위임된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가) 영 제13조제3항제8호 : 행정재산 수익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나) 제17조제6항 :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대상

다) 제29조제1항제12호 : 일반재산 수익계약으로 대부

라) 제52조의3제1항제2호 : 특정인에게 지식재산 사용허가등

나. 상위법령 위반사항 삭제 정비(안 제25조)

1) 삭제 :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 따로 징수가능

2) 정비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토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채취료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가능

다. 위임범위 일탈 규정 정비(안 제26조제3항)

건물 대부료 산출 시 층별로 부지평가액에 감경비율 적용규정 삭제
라. 건물과 부지의 면적 계산법(안 별표 1)

1) 계산법을 보기 쉽게, 별표로 규정

2)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법 ⇒ 건물과 부지의 면적 계산법으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함

마.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 조문 순서 및 문장 정비(안 제3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4조, 제29조,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31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2. 19.~3. 1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제7조 조 제목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공유재산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공유재산의 대장”을 “공유재산 대장”으로 한다.

제15조의2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조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영 제13조 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토석 채취료)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석 채취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채취료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부지면적의 경우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축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조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감면할 수 있다.”를 “면제”로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감면할 수 있다.”를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항을 제4항·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료 및 사용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2.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3. 대부료 및 사용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u><단서 신설></u></p> <p>②~⑩ (생략)</p> <p>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u>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u></p> <p>제15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u><신설></u></p> <p>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u>다만 위촉직 위원</u>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p> <p>②~⑩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유재산 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u>공유재산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대장은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u></p> <p>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u>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25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토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토석시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③ 삭제(2016.12.28.)

④ 삭제(2016.12.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토석 채취료)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석재량과 토사량을 구분하여 채취료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별표 1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부지면적의 경우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삭 제>

1.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는 부지평가액 전액

2.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
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
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물평가
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경우에 건
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
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층
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
하는 면적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층의) 총 전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 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

<삭 제>

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2. 제1호에 따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공용면적의 30퍼센트를 적용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지상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고,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사.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바.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삭제>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면제

가.~사.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경

가.~바.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경

가.~바. (생 략)

② 삭제 (2016.12.28.)

③ (생 략)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2.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3.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 략)

⑦~⑨ (생 략)

제40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세 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연면적의 세 배 이상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1.~7. (생 략)

② 별표 1에서 규정되지 않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가.~바.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료 및 사용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2.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3. 대부료 및 사용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⑦~⑨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1조(청사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1.~7. (생 략)

② 별표 2에서 규정되지 않은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2, 정리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5조(물품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3, 정리구분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건물과 부지의 면적 계산법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frac{\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text{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	---	-------------------	---	--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frac{\text{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공용면적과전용면적의 합계)}}{\text{해당 건물의 연면적}}$
--------------------	---	-------------------	---	---

1.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이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함
2.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0-2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의 장기화로 외출이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여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기본소득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정함(안 제4조)

1) 예산 범위에서 지원,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함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지원 가능

다. 환수 및 중복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 4,165,9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생략(「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비용추계서 : 불입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거창군민에게 긴급히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경기회복 및 주민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긴급히 지급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기본소득 지원) 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재난기본소득을 예산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제4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긴급 재난기본소득 가구당 지원

나. 관련 조문

1) 제4조(재난기본소득 지원)

2)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한시적 경비로 1억 이상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지원액 \ 연도	2020년
군비	4,165,900

3. 관련 의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원 함으로써 가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도)

1. 1인~2인 가구 : 9,060가구 × 300천원 = 2,718,000천원
2. 3인~4인 가구 : 2,656가구 × 400천원 = 1,062,400천원
3. 5인 이상 가구 : 771가구 × 500천원 = 385,500천원
4. 총 4,165,900천원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김 근 호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0-1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심적 부담 경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함(제3조)

-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제1항)
- 2) 기본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제2항)
-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제3항)

다. 이중지원 제한 및 지원 중단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78,500천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 30.~2. 19.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발급 대상자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가정의 산모(이하 “기본지원 대상”이라 한다)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기본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산모의 친족, 법적대리인을 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20년 3월 1일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발생요인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나. 관련 조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0,500	70,500	70,500	70,500	70,500
	교통비 지원	8,000	8,000	8,000	8,000	8,000
	소계	78,500	78,500	78,500	78,500	78,500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 140명 × 503,000원 = 70,500천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가. 40명 × 200,000원 = 8,000천원

작성자 : 보건소장 조춘화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0-2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방역용품을 지원하여 방역취약계층을 보호함은 물론 군민 스스로 감염병 예방의 주체로 만들고, 방역 우수대응 기관·단체 등을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방역을 유도하여 감염병 유행 및 확산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입법목적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정함(안 제3조)
- 다. 방역용품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라. 감염병 우수 대응 기관·단체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마. 지역의료기관과 상시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01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생략(「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비용추계서 :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교육 및 홍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방역용품 등 지원)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수대응 단체 등에 지원)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 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을 한 우수 기관·단체·개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감염병병원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발적 방역 노력
2. 군의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방역용품 등 구입비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 제4조(방역용품 등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101	20	20	20	20	181

3. 관련 의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기 위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1. 마스크 구입비 : 11백만원
2. 손소독제 구입비 : 47백만원
3. 살균제 구입비 : 43백만원

작성자 : 보건소장 조춘화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2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약초가공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노화지원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향노화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노화 산업 육성 지원 대상 확대함(안 제6조제1항제7호)

1) 향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
나. 약초 가공품 지원근거 신설(안 제6조제2항)

다. 향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정함(안 제11조의2)

- 1) 기능 : 군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 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민관협력체계 구축, 건강관리 강사 인력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등
- 2) 위탁운영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5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3. 6.~3. 2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기존 제목 외의 부분)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향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

② 군수는 향노화산업 홍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향노화 제품이나 약초 가공품을 예산 범위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향노화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향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군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건강관리 강사 인력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4. 그 밖에 건강관리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6. 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7.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6. 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7. 항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u>② 군수는 항노화산업 홍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노화 제품이나 약초 가공품을 예산 범위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1조의2(항노화지원센터 설치 등)</p> <p><u>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p><u>제12조(거창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위치)</u> <u>① 군수는 약초, 향노화 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약초유통센터(이하 “약초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u> <u>② 약초센터는 거창읍 거합대로 3372 일원에 둔다.</u></p>	<p><u>민관 협력체계 구축</u> <u>3. 건강관리 강사 인력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u> <u>4. 그 밖에 건강관리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삭 제></p>
<p><u>제13조(약초센터의 기능) 약초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약초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전처리 및 저장</u> <u>2. 약초와 향노화 제품의 전시·판매 및 마케팅</u> <u>3. 향노화 제품 개발</u></p>	<p><삭 제></p>
<p><u>제14조(약초센터의 위탁) 군수는 약초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약초센터의 관리·운영을 약초생산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u></p>	<p><삭 제></p>
<p><u>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 안 제6조제2항, 제11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약초가공품 등 주민에게 지원, 향노화지원센터 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50	100	100	100	100
약초가공품 지원	30	60	60	60	60
지원센터 강사료	15	30	30	30	30
지원센터 운영비	5	10	10	10	10

3. 관련 의견

약초 가공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공동체형성

작성자 : 산림과장 최 태 환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0-2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된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1) 명칭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 2) 위치 :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

다. 시설 및 운영을 정함(안 제3조)

라. 입장료·체험료·시설사용료, 할인 등을 정함(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마. 입장료 등 면제 및 반환을 정함(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제10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569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3. 6.~3. 2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 명칭은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힐링랜드의 위치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 1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힐링랜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림치유센터,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운영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힐링랜드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입장료 등 징수 및 할인) ① 힐링랜드의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권 발행, 가족단위 방문자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징수, 할인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입장료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7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
 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제6조(입장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만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1항의 입장료, 시설사용료(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및 체험료(제4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구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인	1,000원	700원	300원
단체	700원	500원	200원

2. 체험료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분	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에 실제 필요한 비용	

[별표 2]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성수기	비수기
주차장	승용차,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30분	500원 (10분 초과당 200원)	
		1일	5,000원	
	승차인원 16인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30분	1,000원 (10분 초과당 400원)	
		1일	10,000원	
산림휴양관	36제곱미터 (2인~4인)	1일	100,000원	70,000원
	52제곱미터 (6인~8인)		140,000원	90,000원
	80제곱미터(10인)		180,000원	150,000원
숲속의 집	38제곱미터(2인~4인)	1일	100,000원	70,000원
	52제곱미터(6인~8인)		140,000원	90,000원
셔틀버스	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			

비고: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비용

나. 제2조제3항 : 군수는 힐링랜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림치유 센터,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운영사무실,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569	549	559	570	581	2,828

-최근 물가상승률 1.9퍼센트 반영

3. 관련 의견

산림치유로 인한 국민의 정서함양 및 효율적인 향노화 힐링랜드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 필요함

4. 비용추계 요약

가. 인 건 비 : 60백만원

나. 일반관리비(제세공과금 등) : 479백만원

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 30백만원(2020년만)

작성자 : 산림과장 최 태 환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2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는 2017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에 국농소 마을회 소속 농업회사법인 “강과사람”이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준공됨에 따라 그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가 함께 규정되었음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입법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 삭제(안 제2조)
- 다.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 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신설(안 제8조)
 - 1)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 2)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기능
 - 가) 하천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 나)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 다)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
 - 3)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3. 18.~4. 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지원대상지역”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를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군의원”을 “거창군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 동의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적용범위)</u>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삭 제></u></p>
<p><u>제3조(주민회의 개최)</u>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3조(주민회의 개최)</u>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u>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u>군의원과</u> 이장으로 한다. ③ 당해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p><u>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u>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u>사업을</u>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u>해당</u>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u>거창군 의원과</u> 이장으로 한다. ③ <u>해당</u>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생략)

②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 (생략)

② 당해 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 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1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건축법」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고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령위배 소지가 있는 내용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나. 법령위임 범위 벗어나 법령위배 소지 규정 삭제

1)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 중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안 제6조제2항제4호)

2) 이행강제금 감경 위반행위 중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안 제42조제2항제1호)

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적용완화 규정 정비(안 제15조제1호·제2호)

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산정기준·예치방법 변경(안 제23조)

마. 가설건축물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축소(안 제26조제4호)

바.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법령 확인·재기재 사항 삭제(안 제34조제3항)

1) 위임행정규칙인 국토교통부고시 조정기준에 따르면 되는 조정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기준

사. 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규정 변경(안 제42조제1항·제3항)

1)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됨에 따라 그 내용 정비

2) 법령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변경

가) 총 부과횟수 5회 ⇒ 1년에 한 번

아. 공작물 범위의 모호한 기준 정비(안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1) 삭제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건축법」 제4조 · 제5조 · 제13조 · 제20조 · 제27조 · 제42조 · 제58조 · 제61조 · 제80조
-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 제15조 · 제80조의2 · 제11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1. 21.~2.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 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

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23조 조 제목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을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함.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 가. 공사시공자의 도장이 찍힌 도급계약서
 - 나. 건축주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공사 원가계산서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함

제2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제6호를 제4호·제5호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를 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만 한다.

제43조제2항 중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를 “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아스콘·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저장 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제4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7.1.25.)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나.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p>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건축사업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건축관련업무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2.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삭 제>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 퍼센트로 한다.

2. 예치금은 「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제26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 퍼센트로 함.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공사시공자의 도장이 찍힌 도급 계약서

나. 건축주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공사 원가계산서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함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5. 공장부지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1조(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은 매년 1월에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제34조(대지의 조경)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삭제>

4. 공장부지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1조(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34조(대지의 조경)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이외의 용도와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저층부분 및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의 면적까지로 한다.

4.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생략)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단서에 따라 제1항의 경우 총 부과 횟수는 5회 이내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삭 제>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만 한다.

한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증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아스콘·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저장 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사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증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를 말한다.

<삭 제>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3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7)

- 1) 감면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2) 감면율 : 50퍼센트
- 3) 감면기간 : 3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3. 16.~4. 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타목란,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 대상	감면율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50퍼센트

6. 타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3개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요금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0-3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 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요금 감면 신설(안 별표 7)

- 1) 감면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2) 감면율 : 50퍼센트
- 3) 감면기간 : 3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65조, 「지방공기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3. 16.~4. 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아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감면 대상	감면율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50퍼센트

비고

1.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2.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감면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실제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함. 다만, 1개의 계량기로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목의 경우 지방상수도로 전환 후 2년 이내에 급수신청의 경우에 한정하며, 4년차부터는 정상요금을 적용함
4. 아목에 따른 감면기간은 3개월.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요금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